

仲裁研究, 第 15 卷 第 3 號  
2005년 12월 1일 발행, pp.139-174

논문접수일 2005. 9. 13  
제재확정일 2005. 11. 23

##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plan of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윤 선 희\*\* Sun-Hee Yun

### 〈목 차〉

- I. 서 론
- II. 남·북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주요특징
- III.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법 비교
- IV. 남·북한 지적재산권 통일화 방안

주제어 : 남북,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법, 북한의 지적재산권, 남북교류 협력, 특허, 상표, 통일화 방안, 남북 지적재산권 통일화방안

\* 이 논문은 2005년 8월 23일~25일까지 북한 금강산관광호텔에서 개최된 남북상사증재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I. 서 론

남북이 분단 된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 남·북한<sup>1)</sup>은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한민족 동반자로써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법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의 재산 보호 및 사업조건의 보장 등을 다루고 있어 남북경제협력법의 계기로 남과 북은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남북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특허와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한기업들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고급노동력을 갖춘 개성 공단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원산지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sup>2)</sup> 이미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들은 북한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특허나 상표를 등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sup>3)4)</sup> 다만 국내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제3국의 현지법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명의로 북한에 출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따금씩 보도

1) 여기서 남한이란 대한민국을 약칭하여 사용하며, 북한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을 國(國)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해의 도모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위반하여 북한을 국가체제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2) 이번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특혜관세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한선례를 마련했다.(2005년08월05일(금요일)코리아헤럴드; [http://news.media.daum.net/foreign/englishnews/200508/05\\_korherald/v9819072.html](http://news.media.daum.net/foreign/englishnews/200508/05_korherald/v9819072.html)).

3) 매일경제문 2000년 9월 2일; 정충원, 북한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년, 4쪽

4) 중앙일보 2004-06-04 17 : 54 : 48

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sup>5)</sup> 한편 이러한 사정 하에서 6·15공동성명 제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적재산권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0년에는 남과북이 “한마음” 담배 담배를 계기로 공동상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sup>6)7)</sup>

그러나 남과 북의 지적재산권분야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반세기라는 시간적 장벽으로 인하여 용어상이나 법제도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과 북의 지적재산권교류 협력 및 향후 통일화 방안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남북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향후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분야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5) 남북한 모두 WIPO, 파리협약, 그리고 특허협약(PCT) 가입국이므로 “내국 민 대우원칙”에 의거 상호출원 및 등록가능성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체제 인정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자 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현재까지 남한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련한 직접 출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3국인 명의로 상표출원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5월 현재 20여건의 상표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일찍부터 북한은 외국기업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출원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우리기업에는 95년을 전후해 상표권에 한해서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는 기술적인 표준과 국가기술의 보호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한 기업의 북한내 출원등록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http://www.globalwindow.org/front/main.html>(북한의 산업재산권 2004-07-29; 북한뉴스 레터 8월호개재); 정충원, 북한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2002년), 3쪽;<http://www.patwon.co.kr/htm.htm>)
- 6) 북한뉴스레터2000년4월호
- 7) 남북한 공동 브랜드로 북한에서 제조해왔으나 판매가 부진한 ‘한마음’과 ‘잎스’ 담배의 생산이 중단되고 저소득층 공급용 담배인 ‘솔’이 대체 생산된다. 20일 한국담배인 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평양 ‘룡성담배공장’에서 제조해오던 남북 최초 공동브랜드 담배인 ‘한마음’과 ‘잎스’의 생산을 전면중단하고 ‘솔’담배(월 5000만개비 생산규모)를 북한에서 제조하기로 했다.(동아일보 2001-12-20 18 : 48])

## II.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제의 주요 특징

### 1.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제의 일반적인 특징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8년 9월 5일) 제74조는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남·북이 지적재산을 권리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함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지적재산권체계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이란 물질문화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써 크게 대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과 소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과 상표 및 서비스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상표권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권리들을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미등록상표, 미등기상호 등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등도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의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지적재산권법제 역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 규정은 1967년 제정된 후 1978년, 1986년 개정되고 그 후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독자적으로 제

정되어 현재 북한도 남한과 같이 대발명과 소발명을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법이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완전히 대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sup>8)</sup>

북한발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발명을 특허권과 발명권의 2원적인 권리보호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특허권이란 새로운 생산방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그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법적권리이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도입·이용에 대한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로부터 특허권 자체나 또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용권을 넘겨 받아야 한다.<sup>10)</sup> 이에 반해 발명권이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공업적으로 실현하여 보다 좋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및 재산권 권리”<sup>11)</sup>라고 설명한다. 즉 발명권이란 기술을 발명한 자

8) 육소영, 윤권순, 북한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2003년, 46쪽,

9)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86년 개정법률)”과 “발명법”에는 그 규정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발명법의 경우 시행세칙이 아직 없다는 면에서 볼 때, 발명법에 의해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86년 개정법률)”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78년 개정법률)”이 1986년 개정될 당시에 동 개정법 말미에 개정전의 법이 동법에 의해 폐기됨을 명시하였으나, 발명법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0년에 작성된 북한의 공업소유권설명 논문에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86년 개정법률)”을 북한의 관련법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발명법”이 1986년 개정법률을 대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두 법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컨대 특허권 보호기간등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담고 있고, 그 경우 “발명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86년 개정법률)”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2001년 제정)”과의 관계는 후자의 법령이 입수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육소영외1, 앞의 보고서, 46쪽)

10)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역사·법학』 2000년 2호(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61쪽;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1), 22쪽 재인용.

11)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52쪽;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1), 23쪽 재인용.

에게 부여되는 인격권 및 재산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발명자는 동일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 또는 발명권 중 하나의 권리를 선택하여야 한다.<sup>12)</sup> 다만 내국인의 경우, 실시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발명메달과 상금을 택하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 보상보다는 권리보호가 목적이므로 특허권을 선호하고 있다.<sup>13)<sup>14)</sup></sup>

<sup>15)</sup> 이렇게 북한이 특허권과는 별도로 발명권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북발§19 ~ §24)

북한은 1991년까지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 상표 및 기타표지,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8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8월 27일에는 『원산지명법』<sup>16)</sup>을 별도 제정하였다. 그 밖에 문학, 학술 분야의 저작물과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각 저작권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남한과 유사하다.

## 2. 주요 용어와 제도상의 특징

남북한의 경우 정치, 사회적인 이념과 제도가 달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여하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또한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나 조직 그리고 절차 등에서도 차이점을 보여 이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

12) 북한 발명법 제24조 (이하 북한 발명법은 '북발'이라 한다.)

13) 김중효, 상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체재산권제도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체재산권 상호 보호방안, 특허정보, 1994년 9월호, 54쪽

14) 북한 발명법 제19조, 제24조

15) <http://www.globalwindow.org/front/main.html>(북한의 산업체재산권 2004-07-29; 북한뉴스레터 8월호 게재)

16) 2003년 8월 27일 『원산지명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

한 예로 북한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남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발명법상의 발명에 대한 정의와 특허법상의 발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남한의 “창작”이 북한의 “새롭고”에, 남한의 “고도의”라는 표현이 북한의 “발전적”이라는 표현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어 표현상의 차이일 뿐 그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명법상의 발명정의규정을 살펴보면 발명법 제2조의 「…이미 알려진」이란 표현은 남한의 「비공지성」에 해당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라는 뜻은 남한의 「신규성」으로 해석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라 표현은 남한의 「진보성」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특허법은 제2장 제29조에서 제56조에 이르기까지 특허등록요건 및 출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 발명법은 제3조에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에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발명법만으로는 특허등록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특허등록 대상<sup>17)</sup>, 절차, 권리의 효력 및 소멸, 침해 및 구

17) <http://www.globalwindow.org/front/main.html>(북한의 산업재산권 2004-07-29; 북한뉴스 래터 8월호개재)에 의하면, 북한의 발명은 기계나 설비의 형태, 장치, 합금제품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혁신의 경우는 기계설비나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재설계나 강화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다.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은 기계류의 발명이나 과학적 발견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발명과 기술혁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 사회과학이론 및 순수과학이론 이론
- 산업미술과 의장
- 계산도표, 표장, 기호, 컴퓨터 프로그램

제에도 상이점이 있고, 관련법규나 용어에도 남한의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발명·기술 혁신법”<sup>18)</sup>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sup>19)</sup>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며, 『봉사표』를 “서비스표”로 소개하거나, 『본래명칭』을 “원산지표시”<sup>20)</sup>로 소개하거나 “지리적표시 또는 원산지표시”<sup>21)</sup>로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원산지명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보

- 시설물 및 건축물의 디자인
- 경제조직 및 회사경영의 방법

또 발명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 화학적으로 얻어지는 물질
- 의약품 및 식품
- 원자핵 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및 원자력기술
- 신변종 식물과 동물육종 및 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한 발명

그 외 특허의 요건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경제적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심의소는 출원문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해주고 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의 단일성이 유지되도록 매발명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하나의 신청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22조). 선출원주의(주8)를 취하는 우리의 경우 출원문건에 이상이 생겨 보정지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출원 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지시를 받을 경우 보정된 날자만큼 출원일이 순연되므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 심사결과 출원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이유를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신소청원(불복항고)을 하여야 한다. 등록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명되는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외국인은 반드시 평양발명·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출원해야 한다(동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20조).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약(PCT)에 의거 출원한 뒤 북한내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외국인도 위 대리부를 통한 발명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18)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1998), 283쪽;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1), 129쪽

19)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1), 65쪽; 육소영, 윤권순, 북한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45쪽,

20)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1997년12월, 367쪽; 김중효, 상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상호 보호방안, 특허정보, 1994년 9월호, 51쪽; 정충원, 북한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년, 3쪽.

21) 권재열외8,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2004), 397쪽; 권규우, 북한산업제도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방안, 지식재산21, 제64호, 43쪽.

아 『원산지표시』와는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첫 공정』을 “선출원”이나 『기업소』를 “국공영기업”<sup>22)</sup> 또는 “공장을 중심으로 한 업체”, 즉 남한의 포항제철과 같은 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황해제철연합기업소 『黃海製鐵聯合企業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金策製鐵聯合企業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이 그 예이다<sup>23).</sup>

### III.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법 비교

#### 1. 남·북한의 발명보호법제 비교

##### (1) 법제 구성

북한의 발명법은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발명법의 사명과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의 원칙을 제2장은 발명등록의 신청절차와 방법, 제3장은 발명의 심의등록 절차와 방법, 제4장은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제5장은 발명사업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특허법은 총 12장 23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5장 특허권,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제9장 소송, 제10장 국제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 내용의 비교

발명법과 특허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발명법은 발명 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22)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1997년12월, 365쪽 주280.

23)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a=w&s=&f=&z=A&q=%B1%E2%BE%F7%BC%D2&x=25&y=9>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북발§1)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남특§2)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발명법은 발명보호제도의 확립을 통한 인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은 발명의 보호·장려·이용도모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내국인에 대한 실시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남한과 같이 '발명의 이용도모'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북한 발명법에서의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말한다.(북발§2) 남한의 경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남특§2)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용어상의 차이일 뿐 거의 유사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북한 발명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발명을 한자에 발명권과 특허권 중 하나를 택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대발명은 특허권으로만 보호가 되어 진다.

북한의 특허권은 우선권을 받은 날<sup>24)</sup>로부터 15년 동안 존속하며 단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북발§25) WTO/TRIPS가 규정한 보호기간인 20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남한의 특허권인 경우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남특§88①) 일정한 사유에 한해 보호기간을 5년의 기간 안에서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남특§36)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상이 용가능성, 신규성(남특§29①), 진보성(남특§29②), 확대된 선원주의(남특

24) 우선권을 받은 날이란 발명등록기관에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을 말한다.

§29③) 등을 심사요건으로 하여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북한 발명법은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명등록의 신청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기술의 특성·수준, 공업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효과성을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다.(북발§14)

북한 발명법은 물질특허, 약품 및 음식물, 동·식물 변종 및 생명 공학적 방법을 통한 동·식물 신품종에 대해서는 발명을 허여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 1973년도까지 음식물 및 기호물의 발명, 화학방법에 의한 물질발명,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발명 등 북한의 규정과 같이 불특허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이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남특§32)

특허출원시의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발명법은 등록신청서와 기술설명서 및 제품의 견본이나 모형, 시편, 시료 등을 함께 첨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발§11~§12) 남한에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북한과 같이 제품의 견본이나 모형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남특§42①②)

북한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발명에 대해서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야 하는 데 반해 남한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만 심사토록하고 있으며 (남특§59①②) 특허심사가 확정될 때까지 약 2~3년이 소요된다.

북한은 발명 심의를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에 국가발명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한은 특허청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발§17)

남한은 이중출원제도를 두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간의 권리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발명권과 창의고안권간의 권리변경제도가 없으며 다만 특허권과 발명권과의 권리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도 발명권에서 특허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북발§32)

북한의 발명법은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특허권보호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물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없앰에 대한 국가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짐을 규정하고 있다.(북발§27) 남한법인 경우, 재정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상의 규정은 없지만 북한법과 같이 특허권소유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나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다.

특허법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나아가 2이상의 의약을 혼합이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남특§96) 발명법도 특허법과 같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이용하는 경우, 과학연구의 실업에 이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인 없이 특허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북발§33) 다만 우리법과 달리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발명을 해외에서 특허권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북발§22) 남한의 경우 승인 없이도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sup>25)</sup>,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다양한 민사적 구제방안을 인정하고

---

25) 남한 특허법 제126조 (이하 남한 특허법을 '남특'이라 한다.)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명법은 오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북발§41)

그 밖에 특허법은 침해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남특§225) 기타 여러 가지 형사적 벌칙규정(남특§226~§229)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구체적인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북발§42)

남북한 발명보호법제의 주요 공통점을 살펴보면 먼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약간의 형식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특허 등록 후 공고 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이에 대해 이의(의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특허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필요시 국가가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특허권 및 실시권 등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남한 특허법에는 없는 발명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발명권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발명권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을 주어지며(북발§19), 발명권과 특허권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북발§32) 또한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를 국가의 정책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북발§5), 국가가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며,(북발§6)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와 협조의 강조를 명문상 규정하고 있다.(북발§7)

남한 특허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재외자를 위한 특허관리인 제도(북발§7)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자서류에 의한 특허출원(남특§28③), 일정 사유에 한하여 발명을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남특§30), 식물발명특허(남특§31), 무권리자가 출원했을 경우의 정당권리자보호(남특§34~35), 직무발명제도(남특§39~40), 특허와 실용신안간의 이중출원제도(남특§53), 분할출원제도(남특§52) 출원의 포기·취하, 심사청구제도(남특§59), 우선심사청구

제도(남특§61), 법정실시권(남특§103~105), 강제실시권(남특§106~107), 침해로 보는 행위(남특§127), 손해액 추정(남특§132-2~185), 기타 각종 심판제도(남특§132조의2~185),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남특§192~214)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남북한 상표법 비교

### (1) 법제구성

북한은 1999년 이전까지 상표와 공업도안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상표법은 총6장 4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법의 기본, 제2장은 등록의 신청, 제3장은 심의등록, 제4장은 권리보호, 제5장은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상표법은 총 10장 9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은 심사, 제4장은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장은 과태료, 제6장은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은 심판, 제8장은 재심 및 소송, 제9장은 보칙, 제10장은 별칙을 규정하고 있다.

### (2) 주요내용의 비교

북한의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이에 반에 남한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7)</sup> 남한의 상표권이 일반수요자의 이익과 함께 상표권자의

26) 북한 상표법 제1조 (이하 북한 상표법을 '북상'이라 한다.)

27) 남한 상표법 제1조 (이하 남한 상표법을 '남상'이라 한다.)

이익을 보호함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 상표법상 상표란 한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에는 글자상표, 그림상표, 기호상표, 조각상표와 봉사표식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상§2) 남한상표법인 경우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남상§2) 북한 상표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상표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다른 점은 남한은 서비스표를 상표와 별개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봉사표식을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표로써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상표법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국호 또는 국장, 국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이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상품의 이름, 조성, 특성 같은 것만을 표기하였거나 해당 규격을 밝히지 않은 표식,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숫자, 기하학적 표식,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관계에 어긋나는 표식,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북상§21)

이에 반해 남한은 국기·국장 등과 유사한 상표, 국가·민족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상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 상표, 공서양속 위반상표,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의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자리적 표시 등록단

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 저명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외국의 저명상표, 기능적 상표 등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남상§7)

남한의 상표법에만 있는 부등록사유를 살펴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의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외국의 저명상표, 기능적 상표,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어진 상표를 부등록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상표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람회, 전시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북상§16) 남한 상표법도 위의 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제도로써 출원시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출원시 특례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의제해주는 제도이다.(남상§21)

북한의 기관, 기업소, 공민 등이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북상§12) 남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즉 누구나 원하는 나라에 자유롭게 출원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 분류의 기재와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북상§9) 남한 상표법인 경우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지, 대

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 및 주소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등을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남상§9) 북한상표법이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제출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북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심의를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지만(북상§19) 남한의 경우 심의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 상표법은 등록 후 등록공보를 통한 공개를 하지만(북상§23) 남한상표법은 출원 후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공개를하도록 하고 있다.(남상§24) 또한 북한상표법은 등록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의견)신청을 할 수 있지만(북상§24) 남한의 경우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남상§25)

북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북상§39) 남한 상표법인 경우 5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북한법과 같이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심판에 의한 취소심결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밖에 제3자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북한상표법은 침해금지청구권(북상§29) 손해배상청구권(북상§29)을 인정하여 상표권자를 구제해 주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상표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과 함께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를 규정하여 상표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해 주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른 지적재산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침해금지청구권을 상표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상표법은 상표침해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형사적, 행정적 벌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남상§93~§96) 북한상표법은 이러한 구체적인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상§49)

남북한 상표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먼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상표법인 경우 선출원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등록의 신청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아 선출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기간 만료 6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사용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과 상표권과 사용권의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북한 상표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나라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북상§40) 상표권의 보호를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북상§5), 또한 국가가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북상§7) 또한 북한상표법은 상표권을 소유한 자는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 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상§29) 마지막으로 북한 상표법은 상표사업과 관련된 요금을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남한 상표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단체표장(남상§2조3호)과 업무표장(남상§2조4호),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남상§12), 출원공고제도(남상§24),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남상§16~17), 출원의 분할(남상§18), 출원의 변경(남상§19), 손실보상청구권(남상§2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제도(남상§46조의5), 지정상품추가등록(남상§47),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남상§51), 침해로 보는 행위(남상§66), 손해액 추정(남상§67), 고의의 추정(남상§68), 각종 심판제도(남상§70조의 2~§82)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남북한 디자인보호법제의 비교

#### (1) 법제구성

남북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로는 북한의 공업도안법과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1999년도까지 상표와 디자인을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으로 함께 규정하였다가 1999년 2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총 5장 5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법의 기본, 제2장은 등록의 신청, 제3장은 심의등록, 제4장은 권리보호, 제5장은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은 총 10장 8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은 심사, 제4장은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은 디자인권, 제6장은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7장은 심판, 제8장은 재심 및 소송, 제9장은 보칙, 제10장은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의 비교

북한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염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8)</sup>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양 법규는 문언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타지적재산권법과 같이 디자인 보호를 통한 경제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남디§2①) 즉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만 디자

28) 북한공업도안법 제1조 (이하 북한공업도안법을 ‘북공’이라 한다.)

29) 남한디자인보호법 제1조 (이하 남한 디자인보호법을 ‘남디’라고 한다.)

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북한 공업도안법상의 공업도안이란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북공§2) 이에 의하면 공업도안은 제품성(물품성), 형태성, 시각성(그림이나 사진으로 묘사된 것)을 가진다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과 유사하나 심미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남디§5③), 신규성(남디§5②), 창작성(남디§5③)등의 등록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 공업도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북한 공업도안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았을 경우 그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북공§16)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즉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그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남디§8)

북한 공업도안법은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도안, 이미 공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도안,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경제적 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다.(북공§21) 특이한

점은 공업도안법이 건축물이나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에 대해서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 효과성이나 실용성이 없는 도안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디자인보호법이 공업성 이용가능성과 그 취지를 같다고 할 수 있다.

남한 디자인보호법인 경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부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남디§6) 북한의 공업도안법이 기능적 디자인을 부등록 상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의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며 신청에 따라 5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북공§35) 이에 반해 남한의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남디§40) 공업도안권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결국 남북한 디자인보호기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공업도안 역시 남한과 같이 원칙적으로 등록 후 공보를 통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업도안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가 되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남디§29조의2)

북한에서 공업도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도안명, 도안의 분류, 신청자 및 창작가의 이름을 밝히며 도안과 도안 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북공§10) 남한에서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인지 유사디자인인지의 여부,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디자인심

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남디§9)

제3자가 공업소유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공민 등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디자인권자의 북한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손해를 보상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침해금지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인정하여 디자인권자의 이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공업도안법을 어긴 기관이나 기타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죄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기타 다양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디자인보호법제의 유사 규정을 살펴보면 선출원주의, 1의장1출원주의, 공동출원규정을 들 수 있다.

북한 공업도안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규정을 들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공업도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업도안법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등록심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북공§19) 공업도안권 소유자의 권리와 규정하고 있다. 즉, 공업도안권자는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북공§29)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디자인권자 역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북한 공업도안법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공§39)

이 밖에 공업도안법은 국가가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공업도안권의 보호를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외국파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점 공업도안권의 신청과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 디자인보호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디자인제도(남디§7), 복수디자인등록출원(남디§11조의2), 한 벌풀폼디자인출원(남디§12), 비밀디지인출원(남디§13), 무권리자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권리자의 보호(남디§14~§15),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남디§20조의2), 디자인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남디§44), 법정실시권, 각종심판 규정 등이 있다.

#### 4.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 (1) 법제구성

북한의 저작권법은 총 제5장 4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저작권법의 기본, 제2장은 저작권의 대상, 제3장은 저작권자, 제4장은 저작권의 이용, 제5장은 저작인접권자, 제6장은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저작권법은 총 9장 103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6장 저작권 위탁관리업등록,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제9장 벌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의 비교

북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 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비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0)</sup> 남한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1)</sup> 여기서 다른 점은 남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

30) 북한 저작권법 제1조 (이하 북한 저작권법을 ‘북저’라고 한다.)

31) 남한 저작권법 제1조 (이하 남한 저작권법을 ‘남저’라고 한다.)

한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에서 나아가 과학기술발전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대상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북한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 무대예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규정(북저§9)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여기에 건축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다. 즉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남저§4)

또한 북한 저작권법은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를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반면(북저§12) 남한저작권법은 이에 대해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남저§7)

북한저작권법과 남한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내용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즉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남북저작권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남저§16~§21, 북저§15) 다만 남한 저작권법은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최근 전송권을 신설하여 보호하고 있다.(남저§18조의2)

저작권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부터가 아니라 발표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저§23)

저작물의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도 남북한저작권법상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

작권법을 먼저 살펴보면,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는 경우, 도서관·문헌고·박물관·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진열·열람·대출용으로 복제한 경우,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방송·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저§32) 남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남저§22~§30)

또한 북한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란 저작권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북저§33) 남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저작권법이 실연자에게 공연권, 방송권, 배포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북저§34), 남한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공연권과 방송권만 허여하고 있다.(남저§63~§64) 또한 북한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녹음, 녹화, 사진촬영, 중계방송, 재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남한저작권법은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부여하고 있다.(남저§69)

특이한 점은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남한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남저§92)과 손해배상청구권(남저§95), 명예회복청구권(남저§95)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북한저작권법은 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밖의 남북한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북한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저작물을 창조한자 또는 권리(권리를 넘겨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북저§13)) 남한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을 저작권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남한의 경우 당사자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가격제정기관에서 그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북저§31)

남북한 저작권법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등의 방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북저§110~11),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북저§14), 공동 저작권에 대한 규정(북저§17), 저작인격권의 상속 및 양도금지규정, 저작재산권의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함을 규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저작권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금지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북저§6) 또한 북한저작권법은 북한의 기타 지적재산권법과 같이 국가가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점, 기타 국가의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한저작권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저작자등의 추정규정(남저§8),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등의 보호기간규정(남저§37), 출판권제도(남저§54~§60),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남저§73조의2~§73조의9), 영상저작물에 대한특례(남저§74~§7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남저§77~§77조의2), 저작권위탁관리업(남저§78~§80조의2), 침해로 보는 행위(남저§92), 저작자 사망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남저§96) 등을 들 수 있다.

## 5. 남북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제 비교

### (1) 법제비교

북한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총 5장 4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법의 기본, 제2장은 등록, 제3장은 저작권, 제4장은 권리의 보호, 제5장은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총 7장 51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프로그램저작권, 제3장은 등록, 제4장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제5장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6장은 보칙, 제7장은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의 비교

북한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2)</sup> 남한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3)</sup>(남컴§1)

북한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상의 침해행위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의 이름 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북컴§34) 남한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소프트웨어를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

32) 북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제1조 (이하 북한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북컴’이라 한다.)

33) 남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조 (이하 남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남컴’이라 한다.)

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등록, 복제, 이전등록 등의 허위행위,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행위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남컴§29~§30)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경우에는 인격권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해서는 30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북컴§29). 남한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공표한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남컴§7③)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도 일반저작권과 같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권리가 제한되어지기도 한다. 남북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사유를 살펴보면 북한법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이용할 경우, 무상으로 배포된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가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북한법에 비하여 공정 사용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교육목적상으로 복제하는 경우,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입학시험 및 기타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여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남컴§30)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남컴§32)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남컴§31). 북한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북컴§40) 침해금지청구

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이한 점은 북한저작권법에서는 손해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반해 이와 유사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남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여러 가지 별칙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법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의 유사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규정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법제 모두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북컴§20) 또한 남북한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양도를 자유롭게 허여하고 있다.(남컴§15, 북컴§20) 다만 북한은 이 경우 7일안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남컴§17, 북컴§23) 또한 양법은 일반 공중에게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그 허락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여하고 있다.(북컴§31) 이 밖에 양법률 모두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북한소프트웨어보호법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등록심의기간을 3개월로 지정한 규정(북컴§10), 등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북컴§15), 가격제정기관에 의한 요금책정규정(북컴§31), 미성년자에 의한 저작권소유규정(북컴§25), 상속인이 없을 경우의 저작권의 귀속규정(북컴§27) 등이 있다. 또한 북한소프트웨어보호법은 우리법과 달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재산권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북컴§22) 기타 국가가 소프트웨어의 보호사업에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점, 기타 국가의 소프트웨어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남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특유규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규정(남컴§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규정(남컴§5),

프로그램코드역분석(남컴§12조의2),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남컴§16),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남컴§20), 비밀유지의무(남컴§2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남컴§2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 규정(남컴§34조의2) 등이 있다.

#### IV. 남·북한 지적재산권법 통일화 방안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법제의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의 지적재산권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의 가입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한은 산업재산권분야와 저작권분야의 국제기구 및 조약에의 가입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산업재산권분야의 국제기구 및 조약에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은 저작권과 관련된 조약에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WIPO 설립협약은 북한이 1974년 8월14일 가입하였고, 남한은 1979년3월1일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1883)은 남한이 1980년 5월4일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0년 6월10일 가입하였다. 특허협력조약(PCT;1970)은 남한이 1984년 8월10일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0년 6월10일 가입하였으며,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891)은 아직 남한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1980년 6월10일 가입하였다. 그러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에는 남한(2003.1.10)과 북한(1989.6.28)이 함께 가입한 상태이다. 디자인의 국제기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25)과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1958)에는 남한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1992년5월27일과 1997년6월6일 가입하였다. 상품서비

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협정(1957)에는 남한(1998.10.8)과 북한(1997.6.6)이 가입하였으나,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과 WTO/TRIPs협정에는 북한이 가입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2003년 뒤늦게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저작권협약(UCC)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반면<sup>34)</sup>, 남한은 대부분의 저작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남북한 지적재산권을 통일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와 같이 동시에 가입된 국제조약을 통한 상호보호 및 상호교류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겠다. 예컨대 남한은 2003년 4월10일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여 시행되어 마드리드의정서 시스템을 통하여 북한에 출원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남북한의 용어상의 차이와 제도상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극복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상이점은 남북한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통일화 노력은 이미 시도되고 있고 여러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상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정지역을 배경으로 한 FTA논의도 이러한 범주내의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더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사이에서의 논의는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 비한다면 더 쉬운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남·북한 간 지적재산권 상호출원 및 등록보장이라는 단기적인 과제와 남북제도 및 실무의 통일화를 모색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법제 및 단일특허청을 목표로 하는 통일과제로 구분지어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의 합의를 토대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sup>35)</sup>

34)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 방안(2)”, 『계간 저작권』 1994년 봄호, 34쪽.

35) 권구유 앞의 논문, 45쪽.

이러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남북한 각 당국이 정치·경제·문화·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해 서로를 “특수 관계”<sup>36)</sup>로 인식하고, 먼저 서로의 정치·경제·문화·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인적 교류 및 자료 교환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즉, 남·북한에서 개최된 WIPO주관 국제행사에서 상호간 참석한 예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으며 북한 산업재산권 법령 등의 자료입수 또한 WIPO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7)</sup>

동·서독의 경우 통일이 되기 20년 전부터 동·서독 상호간 출원정보 및 정보자료를 교환하였고 이로 인해 동·서독은 큰 혼란 없이 통일 후 제도를 통합할 수 있었다.<sup>38)</sup> 따라서 남과 북은 동·서독의 예를 모범으로 삼아 상대의 지적재산권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예로 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전문가들을 서로 초청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상호 심사관 교환근무제도<sup>39)</sup> 등을 두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질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남북한의 최종목표인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방안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성명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1C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남북

36) 원래 이 “특수관계”는 분단국 상태로 있던 동서독이 1972년 12월 기본조약체결 후 1989년 11월 통일전개시기까지 양독의 관계에 대한 서독의 입장이다. 서독은 단기적으로는 평화, 장기적으로는 민족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실적으로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인정했다. 그래서 서독은 동독관느 달리 국제적차원에서는 양독관계가 국제법적 관계이나 민족내부적으로는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고 분단극복을 모색했다. 우리의 특수관계도 독일에서 원용한 것이다.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2)-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1994년 봄호 37쪽)

37) 김중효, 상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상호 보호방안, 특허정보, 1994년 9월호, 50쪽.

38) 김중효 앞의 논문, 60쪽.

39) 김중효 앞의 논문, 60쪽.

한 지적재산권분야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지적재산권분야는 법제도면이나 용어상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남과 북은 서로의 상이점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실천가능한 단계적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 갈 때 남북한 지적재산권분야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미 1992년의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산업재산권 보호근거조항(“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른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을 마련했다<sup>40)</sup>.

나아가 이러한 산업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족 공동의 이익을 창출시키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규우, 「북한산업제도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 방안」, *지식재산21*, 제64호
- 권재열 외8명,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4년.
- 김중효, 「상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통일을 대비 한 남북한산업재산권 상호보호방안」, 특허정보, 1994년.
-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년.
-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년.

40) <http://www.globalwindow.org/front/main.html>(북한의 산업재산권 2004-07-29; 북한뉴스 래터 8월호개재)

- 육소영·유권순, 「북한의 지적재산권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센터, 2003년.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7정판)」, 세창출판사, 2005년.
- 윤선희, 「특허법(개정판)」, 법문사, 2004년.
- 정충원, 「북한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년.
- 김상호,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연구자료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년.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3권」, 1990년.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상사·경제·노동관계법」, 1997년.
- 법무부, 「소련법 연구(II); 국제사법·특허법·저작권법·노동법」, 법무부 법무실, 1990년.
- 법제처, 「독일통일 관계법 연구」, 1979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1990년.
- 정경모·최달곤, 「북한법령집(전5권)」, 대륙연구소, 1990년.

## ABSTRACT

### A Study on Unification plan of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Sun-Hee Yun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Key Words :** North and South Korea, industrial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laws, industrial property of North Korea, interchange and cooperation patent, trademark, Unification plan